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36105(본소), 2021나36112(반소) 판결 [공사대금
청구의 소 · 약정금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36105(본소), 2021나36112(반소)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8 선고 2020가단856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(담당변호사 양장열, 최건, 박지민)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래춘

변론종결 2022. 6. 15.

판결선고 2022. 8. 31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8. 선고 2020가단856(본소), 2020가단5228970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 한다)는 원고에게 106,168,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

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531,366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재영, 판사 홍석현, 판사 최지아